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0은	0404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55길 17 (아이원 20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상담 의무 불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5일간)
- 5. 기타사항은 익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전다빈(☎ 063-840-65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